

농촌협약 공모사업(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·시행계획)의견 청취안

의안 번호	499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0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농림축산식품부 주관, 2026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에 앞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·시행계획(안)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농촌협약 공모사업
- 위치 : 평창군 북부생활권(봉평면, 용평면, 진부면, 대관령면)
- 사업기간 : 2027년 ~ 2031년(5년)
- 사업비 :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 + a
- 세부내용
 -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(10년)
 -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(5년)

□ 추진현황

-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·시행계획 수립용역 : '24. 10. 14.
- 제1차 농촌공간 행정협의회 개최 : '24. 11. 11.
- 제1차 농촌공간 정책심의회 개최 : '24. 12. 26.
- 북부권 4개 면 주민협의체 구성 : '25. 2. 21.

- 제2차 농촌공간 정책심의회 개최 : '25. 7. 7.
- 제2차 농촌공간 행정협의회 개최 : '25. 7. 25.
- 북부권 4개 면 주민협의체 회의 : '25. 9. 3. ~ 9. 30.
-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·시행계획(안) 공청회 : '25. 10. 17.
- ※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·시행계획 컨설팅 현황
 - 농촌공간 광역 컨설팅(강원특별자치도 주관) : '25. 7. 22.
 - 농촌공간 전문가 전담 컨설팅(농림축산식품부 주관) 매월 2회 자문 진행 : '25. 8. ~ '25. 12.

□ 향후계획

- 농촌공간 정책심의회 개최(기본계획 확정) : '25. 11. 7.
-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: '25. 11. 14.
-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승인 : '25. 12.
-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 승인 : '26. 1.
- 농촌협약 공모사업 응모 : '26. 2.
- 농촌협약 공모사업 결과발표 : '26. 6.
- 농촌협약 체결(농림축산식품부 장관 + 평창군수) : '27. 3.
- 농촌협약 사업추진 : 2027년 ~ 2031년(5년)

□ 기대효과

- 국비 300억 원 규모의 북부생활권 정주여건 개선사업(5년)을 통한 면 소재지 및 배후마을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

관계법령 발취

□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

제7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하고, 사회적·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
2. 기본계획의 방향·목표에 관한 사항
3.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
4.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
5.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6.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7.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·철거·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
8.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9.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
10.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
11. 농촌의 교통·교육·문화·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
12.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·관리에 관한 사항

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침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구조, 토지이용체계,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주민 등의 의견청취)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이나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9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) ① 계획수립권자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)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③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) ① 계획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행계획의 개요
2.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여건
3.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
4.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(주요 사업내용, 과제별 투자계획)
5.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사업계획
6.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7.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
8.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
9. 사업추진 방식
10. 투자계획
11. 기대효과

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) ① 계획수립권자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)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

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6조(농촌협약의 체결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정책 목표 정합성과 투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.

③ 농촌협약을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농촌협약의 신청) ① 농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장·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, 시행계획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

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촌협약의 신청 기간, 처리 기간,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